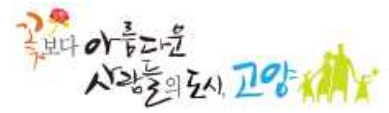


【제 1318 호】



2016년 10월 28일 (금)

고양시보

차 례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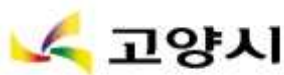
고양시 공고 제2016-1580호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고양시 공고 제2016-1586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8
고양시 공고 제2016-1589호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33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6-264호	도로명주소 고시	38
----------------------	----------	----

공 고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235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43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16-559호	하천공사 시행 변경허가 공고	4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책임있는 인적자원 확보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실에 부합되게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현재 10명의 유급인원을 2명 증원하여 2017년 사업목표 달성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9조제2항)
- 나.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함.
(안 제2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자치행정실 주민자치과 민관협력팀(031-8075-2479)

○ 팩 스 : 031-8075-496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 조례 “라 한다) 제8조” 를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이” 를 “과반수가” 로 한다.

제7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유급직원” 을 “코디네이터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유급직원”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1.6센티미터” 를 “2.4센티미터”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원봉사 인정·보상 기준」” 을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를 “행정자치부”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주민자치과
입안자	담당관 성명	주민자치과 유종국
	팀장 성명	민관협력팀장 김대성
	담당자 성명·전화	문현주 (031-8075-2479)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이사회 구성) ①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6조(이사회회의 회의) ① (생략)</p> <p>②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하거나,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7조(임원의 처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위원회 설치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기구와 정원) ① (생략)</p> <p>② 센터의 사무국은 센터장, 사무국장 각 1명과 <u>코디네이터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유급직원</u>으로 구성한다 .</p> <p>③ (생략)</p> <p>제14조(공인비치) ① (생략)</p> <p>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그 규격은 <u>1.6센티미터 정사각형</u>으로 새긴다.</p> <p>③ ~ ⑤ (생략)</p>	<p>제2조(이사회 구성) ①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p> <p>.....</p> <p>.....</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이사회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과반수가</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임원의 처우) <u>「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9조(기구와 정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코디네이터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유급직원</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공인비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2.4센티미터</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6조(자원봉사 등록 및 인증) ① (생략) 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 인정·보상 기준」에 따른다.</p> <p>제19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 10. (생략)</p>	<p>제16조(자원봉사 등록 및 인증) ① (생략) ②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p> <p>제19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비치) 행정자치부..... 1. ~ 10. (현행과 같음)</p>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고양시 주택 조례」를 폐지하고 「고양시 주택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34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75-311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2.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9. 공동주택의 변압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대 지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법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

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내용의 법령 적합 여부
2.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의 적합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및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검토내용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
5.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적합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토는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사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결과에 따라 차순위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양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 예산 및 주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4.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관련법령 적합 여부

나. 보조금 지원순위 결정

다. 보조금 교부대상 단지 결정

라.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

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자를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심사위원회는 보조금 지원대상 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주민 수혜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2. 시설물 노후 및 보조금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우선순위
- ⑥ 시장은 보조금 지원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실무 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며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위원회 상정 전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 제9조(사업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하고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사업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 정산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받거나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

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심사 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우수관리단지는 3년 안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①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및 소송 중인 사항
2.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주택업무 담당 국장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

택 업무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 ① 조정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서면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23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정신청 내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4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정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① 분쟁조정서는 분쟁조정안이 당사자 등에게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29조(조정 거부 및 중지) ① 시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른 제시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10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과태료 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주택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고양시 주택 조례」(이하 “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를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공동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를 “공동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조례 제6조”를 “공동주택조례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조례”를 “공동주택조례”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		주 택 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주택과장 김 대 식
	팀 장 성 명	공동주택관리팀장 표 명 섭
	담 당 자 성명·전화	견 달 수 (031-8075-3119)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2.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수관·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1천만원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6. 공동주택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2천만원	

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대상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전용면적 60㎡이하	80%	세대당 50만원이하	1994년도 4월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하	50%		
전용면적 130㎡이하	30%		

9. 공동주택의 전기실 변압기 등 전기설비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10.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비고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세대당 700원 이하 및 현장지원수수료 440,000원 이하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가능

11. 사용검사 10년 미만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지원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지원항목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공용부 보수·교체 공사 또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2000세대 미만	2천만원	
	3000세대 미만	2천5백만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다만,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는 최대 지원금액의 50%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음.
3. 지원금액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하여만 지원함.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사업착수보고서

계약자	발주자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총공사금액	
	계약보증금	
	착수년월일	
	준공예정일	
	기타사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관리사무소장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신청자	단 지 명		
	주 소		
정 산 내 용			
사 업 명			
정산금액	계		
	시 보조 금액		
	자체부담 금액		
공사 업체명(연락처)			
착 공 일		준 공 일	
<p>『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관 리 사 무 소 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 :)</p> <p>고양시장 귀하</p>			
<p>구비서류 : 1. 준공내역서</p> <p style="padding-left: 20px;">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p> <p style="padding-left: 20px;">3. 공사 전·중·후 사진</p> <p style="padding-left: 20px;">4.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p>			

[별지 제5호서식]

분쟁조정안

아래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고양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서는 분쟁의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신 청 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피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조 정 내 용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2016. 8. 12. 시행)으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고양시 주택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고양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기준 등 주택건설기준을 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조례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 설정 및 필수 설치 시설의 면적을 규정함.(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택과 주택정책팀(031-8075-3112)
- 팩 스 : 031-8075-493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주 택 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주택과장 김 대 식
	팀 장 성 명	주택정책팀장 이 상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재 용 (031-8075-3112)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에 의거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221-26 외 6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0. 28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 일	부 여 사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75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221-26 (대자동)	20161028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5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로 57 (도내동)	20161028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29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3-10 (대장동)	20161028	20090911	대장-주교의 명칭에서 한 자 씩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1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385-23 (고양동)	20161028	20090911	옛군청이 위치한 곳으로 관아 를 지칭하는 말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사동 132-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282번길 115 (상사동)	20161028	20100126	총장로 시점에서 2820m에 위치한 도로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사동 132-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282번길 117 (상사동)	20161028	20100126	총장로 시점에서 282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9-2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2번길 35-32 (덕은동)	20161028	20100126	중앙로 시점에서 620m에 위 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9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216번길 34-28 (강매동)	20161028	20100126	강매로 시점에서 2160m에 위치한 도로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6-1, 56-132, 56-1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78번길 24-15 (동산 동)	20161028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9780m 에 위치한 도로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6-133, 56-13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78번길 24-11 (동산 동)	20161028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9780m 에 위치한 도로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6-8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78번길 24-7 (동산동)	20161028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9780m 에 위치한 도로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6-1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78번길 30 (동산동)	20161028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9780m 에 위치한 도로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6-1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78번길 36 (동산동)	20161028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9780m 에 위치한 도로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37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396번길 78-25 (오금동)	20161028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3960m에 위치한 도로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62-5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20번길 95 (행주외동)	20161028	20100126	행주산성로 시점에서 1200m에 위치한 도로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6-70, 166-7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담길 3-9 (지축동)	20161028	201110720	지축동의 지자와 정담천의 담자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6-71, 166-8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담길 3-7 (지축동)	20161028	201110720	지축동의 지자와 정담천의 담자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6-72, 166-5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담길 3-5 (지축동)	20161028	201110720	지축동의 지자와 정담천의 담자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6-7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담길 3-3 (지축동)	20161028	201110720	지축동의 지자와 정담천의 담자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6-7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담길 3-1 (지축동)	20161028	201110720	지축동의 지자와 정담천의 담자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6-62, 166-55, 166-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담길 3-4 (지축동)	20161028	201110720	지축동의 지자와 정담천의 담자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6-8, 16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담길 13-3 (지축동)	20161028	201110720	지축동의 지자와 정담천의 담자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6-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담길 3-6 (지축동)	20161028	201110720	지축동의 지자와 정담천의 담자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6-60, 166-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담길 3-8 (지축동)	20161028	201110720	지축동의 지자와 정담천의 담자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6-59, 166-3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담길 3-10 (지축동)	20161028	201110720	지축동의 지자와 정담천의 담자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6-65, 166-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담길 3-2 (지축동)	20161028	201110720	지축동의 지자와 정담천의 담자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25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68-30 (대장동)	20161028	20120401	대주로 시점에서 1070m에 위치한 도로
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257-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68-28 (대장동)	20161028	20120401	대주로 시점에서 1070m에 위치한 도로
2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257-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68-26 (대장동)	20161028	20120401	대주로 시점에서 1070m에 위치한 도로
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49-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2길 28-12 (신원동)	20161028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4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1길 39-9 (신원동)	20161028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4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숭발1길 38-8 (원흥동)	20161028	20120601	소나무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3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2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40-10 (신원동)	20161028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06-7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76-100 (설문동)	20161028	20090824	고봉산 아래를 지나는 도로	
3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90-3, 190-30, 190-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 77-3 (문봉동)	2016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7-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2-1 (백석동)	2016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72-4, 76-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6 (중산동)	2016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72, 76-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4 (중산동)	2016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245-7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108번길 94 (설문동)	20161028	20100126	장진천길 시점에서 1080m에 위치한 도로	
4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05-78, 1005-4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58번길 120-30 (성석동)	20161028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6580m에 위치한 도로	
4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05-87, 1005-6, 1005-7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58번길 120-28 (성석동)	20161028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6580m에 위치한 도로	
4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05-76, 1005-6, 1005-8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58번길 120-26 (성석동)	20161028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6580m에 위치한 도로	
4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19-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26-5 (설문동)	20161028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7700m에 위치한 도로	
4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19-10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70번길 26-9 (설문동)	20161028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7700m에 위치한 도로	
4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99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502번길 33 (풍동)	20161028	20100126	백마로 시점에서 5020m에 위치한 도로	
4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461-1, 46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32-12 (가좌동)	2016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461-5, 461-8, 461-9, 461-10, 461-5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32-16 (가좌동)	2016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461-46, 461-48, 461-53, 461-5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32-14 (가좌동)	2016102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698, 698-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88-31 (가좌동)	20161028	20090911	덕이-구산 명칭에서 한 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13-1, 42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2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385-25	2016.10.28	관련지번 변경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294-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294-11, 294-10, 294-43, 294-44, 294-5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59번길 63-22	2016.10.28	건물번호 합병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294-4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59번길 63-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59번길 63-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59번길 63-16	2016.10.28	건물번호 합병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294-4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59번길 63-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59번길 63-3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59번길 63-30	2016.10.28	건물번호 합병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29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59번길 63-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59번길 63-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59번길 63-31	2016.10.28	건물번호 합병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폐지 시일		비고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시일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32-12	2016.10.28	신축으로 인한 건물 폐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32-12	2011.07.29	가좌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32-15	2016.10.28	신축으로 인한 건물 폐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32-15	2011.07.29	가좌동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32-19	2016.10.28	신축으로 인한 건물 폐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32-19	2011.07.29	가좌동	
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88-31	2016.10.28	신축으로 인한 건물 폐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88-31	2011.07.29	가좌동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08번길 132	2016.10.28	신축으로 인한 건물 폐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08번길 132	2011.07.29	내유동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68-28	2016.10.28	신축으로 인한 건물 폐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68-28	2011.07.29	대장동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78번길 24-13	2016.10.28	신축으로 인한 건물 폐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78번길 24-13	2011.07.29	동산동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6.10.28. ~ 2016.11.11.(14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2016. 10. 28.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

은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은행정지명령 사유	은행정지명령일자	비고
1	05다9077	코란도	KPBLC3AC11P119969	소유자 신청	2016.10.24.	
2	07조7808	Benz E350	WDBUF56J85A812546	소유자 신청	2016.10.24.	
3	경기38다9040	엔터프라이즈	KNALB22832A610111	상속권자 신청	2016.10.24.	
4	46라3391	그랜저	KMHMF21FPPU024206	상속권자 신청	2016.10.25.	
5	86보5361	봉고프런티어	KNCS00322VS336063	상속권자 신청	2016.10.25.	
6	경기73노7561	이스타나-롱15코치	KPDAB7E81XP080979	상속권자 신청	2016.10.25.	
7	경기87라4080	포터초장축슈퍼캡	KMFXXKS7BPYU447249	상속권자 신청	2016.10.25.	
8	47모9075	제네시스	KMHGA41AP8U006925	소유자 신청	2016.10.26.	
9	경기87마8867	포터초장축	KMFXXKN7BP1U472910	소유자 신청	2016.10.26.	

하천공사 시행 변경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시행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소하천명 : 가시골천, 솔개천, 한우물천, 셋말천, 동산천
2. 시행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대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지 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지 내 소하천공사
 - 나.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하천공	연장	5,528m	5,528m	-	확정측량 결과 반영
	하폭	10 ~ 22m	10 ~ 22m	-	
호안공		68,798.12m ²	68,791.26m ²	감 6.86m ²	
교량공		18개소	18개소	-	

4. 변경사유
 - 안전시설물 추가
 - 소하천 선형 및 호안공 변경
 -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허가기간 변경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3
6. 하천공사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6.10.30까지

2016년 10월 28일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